

독일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이 창 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I. 머리말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제도에 대한 개혁이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제도를 복식부기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개혁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 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에 대한 연구에 이어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한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에 있어 해외 벤치마킹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고 유익한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관청회계(Kameralistik)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정관리 수법의 도입을 위하여 1999년 6월 주레벨에서 주내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자치단체예산법개혁의 기본구상」을 승인하였다. 자치단체에서도 주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독일도시회의(대도시 중심으로 조직된 전국연합조직)를 중심으로

새로운 예산회계시스템의 개발 및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덴베르텐베르크주의 비스로호시는 1999년도부터 독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관청회계를 폐지하고 행정지향의 수정된 기업회계적 복식부기(이하 도픽, Doppik이라 함)방식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의 사고를 반영한 새로운 행정관리모델(신행정관리모델, neue Steuerungsmodelle)을 원활히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신행정관리모델은 최근에 있어 독일의 재정난 및 행정에 대한 시민비판의 고조를 배경으로 효율적이고 성과중시의 행정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간에서 경쟁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행정관리 모델에는 행정책임 및 권한의 분산화, 「생산물」로서의 행정서비스의 평가와 이에 기초한 각 행정부서의 재원의 총액배분, 비용대 효과 분석의 도입, 연도중을 포함한 예산의 적시집행에 대한 체크와 컨트롤 등 종래 예산회계제도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사고가 주입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신행정관리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통해

서 이들 새로운 수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II. 신행정관리모델과 예산·회계제도개혁 필요성

1. 현행 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특징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는 각 주의 주법 등에 정해져 있는데, 제도의 큰 틀은 주마다 대체로 동일하다. 독일의 자치단체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관청회계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경상회계와 자본회계로 구분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구분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자본회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항목은 <표 1>과 같은데, 이외의 항목은 경상회계에 속한다. 지방채는 자본회계에 서만 기재할 수 있고 기재비용 및 원금상환은 자본회계로 계상하고 이자지불은 경상회계에 각각 계상되고 있다.

경상회계와 자본회계와의 관계인데, 경상회계의 잉여는 자본회계에 전입된다(이에 대해 자본회계의 잉여는 원칙적

<표 1> 자본회계의 세입세출항목

세 입	세 출
- 경상회계잉여금조입금 - 자산가치감가세입 - 적립금활용액 - 자본지출 및 동조성액에 대한 교부금 · 보조금 및 분담금 등 - 지방채 및 내부차입	- 지방채원금상환, 내부차입변제, 기채비용 및 장기채무상각 - 자산가치증가지출, 타자치단체자본지출 및 동조성교부금·보조금 및 채무부담수권 - 적립금적립 및 과년도결손충당금 - 경상회계전출금

으로 일반적립금으로 충당되고 다른 한편 자본회계의 결손금은 자본회계에서 익년도 조상충용된다). 한편 경상회계의 균형을 위하여 모든 수지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립금을 활용하여 자본회계에서 경상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상회계와 자본회계의 구분은 1975년의 개정시 도입된 것인데,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큰 개정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 신행정관리모델 도입의 확산

1990년대에 들어와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 사고를 접목한 새로운 행정관리 수법으로서 신행정관리모델의 도입 움직임이 전국 자치단체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의 직접적인 동기는 독일 통일후 경제약화에 수반하

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심각한 재정난이다. 그러나 단지 세출삭감 등에 의한 재정재건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개혁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수비범위를 재검토하고 과감한 민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행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기업형의 행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개혁의 압력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신행정관리모델은 미국 자치단체 등에서 실천되어 왔던 뉴퍼벌릭메니지먼트의 사고에 기초하여 각지의 실천사례를 참고로 하여 체계화되었던 것으로 이는 지금까지의 체도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의 수법을 도입하면서 행정을 효율적이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기업체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독일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의 문 제점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년도주의하의 예산에 얽매어 유연한 재정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리소스(인사, 조직, 재정)에 관한 책임(관리부서)과 아웃풋에 관한 책임(각 행정부서)이 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의 제공이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사업의 성과나 비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3.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

신행정관리모델에는 재정책임 및 권한의 분산화, 『생산물』로서의 행정서비스의 평가와 이에 기초한 재원배분, 각 행정부문에 있어서의 비용대 효과의 명확화, 연도중을 포함한 적시의 예산집행의 체크와 컨트롤 등 종래의 예산회계제도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사고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정책임 및 권한의 분산화를 기하려 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경비의 세목까지 예산에 정해져 있어 각 행정부서에서 유연한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단년도주의하에 예산의 집행잔고가 생겨도 각 부서의 판단으로 이월할 수 없어 가능한 연도내에

전부 소비해야 하는 경향이였다. 따라서 총액베이스의 예산배분을 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수법의 개혁이나 유용 및 이월의 탄력화 등의 제도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각 사업마다 비용대 효과를 명확히 할 경우에는 행정서비스는 하나의 『생산물』(고객은 시민)로서 인식되게 되고 그 내용 및 수준에 대해 평가가 행해진다. 한편 비용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원가계산과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리소스소비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 등의 감가상각이나 충당금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경비에 덧붙여 복수의 부문, 생산물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것과 같은 간접경비도 각 부문별 및 생산물별로 구분하여 합산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사업에 관한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직접적인 현금지출이나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관계되는 비용(감가상각, 차입을 한 경우에는 지불이자 등), 광열비나 복사비 등의 집중관리되는 비용, 나아가 해당 사업에 관계되는 직원의 장래의 퇴직수당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민간기업과 같은 페이스의 포괄적인 비용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비용계산을 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현금주의에 기초한 관청 회계 하에서는 현금의 흐름밖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발생주의에 기초한 기업회계의 사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실행관리모델의 도입 확산을 배경으로 중장기적으로 동 모델을 정착시켜 가는 조건정비로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통한 새로운 행정관리의 수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다.

4. 연방 및 주의 예산 · 회계제도의 개혁

위와 같은 움직임에 대응하여 먼저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연방 및 주의 예산회계제도이다. 연방 및 주에서는 경상회계 · 자본회계의 구분은 행해지고 있지 않지만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청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도의 기본이 되는 예산기본법은 연방 및 주에 공통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만 1969년의 개정 이래 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자치단체에서 실행관리모델의 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몇 주에서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시도가

추진되자 연방레벨에서도 1995년부터 예산회계제도를 탄력화하기 위한 모델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1997년 12월에 예산기본법의 개정을 위한 『예산법 · 발전법』(Haushaltsrechts-Fortentwicklungsgesetz)이 제정되어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에서 연방 및 각주는 각각의 예산법을 2001년 1월까지 새로운 예산기본법의 규정에 부합시키도록 개정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년도주의의 완화(이월기준의 탄력화)를 들 수 있다. 예산화된 재원을 가능한 연도내에 전부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없애고 효율적이고 절약적인 예산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월의 기준을 탄력화한다. 둘째, 세입확보 노력의 장려(유용기준의 탄력화)를 들 수 있다. 각 부문에 있어서 증수를 각각의 지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확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용기준을 탄력화한다. 셋째, 비용대 효과 분석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수수료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비용대 효과 분석을 도입한다. 넷째, 성과(생산물)에 대응한 예산편성을 들 수 있다. 예산편성

에서는 아웃풋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한 뒤 총액의 재원배분을 행함과 동시에 예산의 세부결정과 집행의 책임은 각 부문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성과(생산물)에 대응한 예산편성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복식부기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항만관리, 임야관리, 토지등기소등 민간기업과 유사한 부문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

5. 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

이와 같이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은 연방 및 주가 선도하는 형태이지만 복식부기나 비용대효과 분석은 일부 행정분야에서 도입하는 정도이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자치단체가 인식하고 있으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2형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관청회계를 기본으로 하여 민간의 경영관리의 수법을 도입하면서 개선을 기하자는 입장과 기업회계적 복식부기를 자치단체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정하여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도둑의 전면 도입)으로 나뉘어지는 실정이다.

먼저, 관청회계를 유지하는 입장의 주

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행정에 있어서도 사용료 등에 의해 경비가 충당되는 사업(폐기물처리, 상하수도 등), 영리적 요소가 있는 사업(시장, 직원식당 등), 행정내 서비스사업(건물관리, 인쇄 등)등에 대해서는 리소스소비의 상황을 포괄적이고 필요한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이외의 분야 즉, 행정의 중핵에 해당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관계하는 사무사업(인허가사무, 생활보호급부 등)에서는 인건비 등 서비스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아 비용대효과 분석은 의미부여가 어렵고 그리고 민간과의 코스트비교를 할 수 없는 분야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어 기업회계적 복식부기(도둑)의 전면적인 도입이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회계적 복식부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관청회계를 기초로 하더라도 개개의 사업별로 포괄적인 비용의 산출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도둑을 도입할 경우는 리소스소비의 사고가 전 행정분야에 걸쳐 철저히 주입됨과 동시에 다양한 책임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도둑도입의 최대의 장

점은 세금의 비도나 재정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충실하고도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현금의 출납뿐만 아니라 자산 및 부채의 동향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민간기업과 거의 동일한 양식으로 제공할 수 있고 민간기업과의 코스트비교도 용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기업회계적 복식부기의 도입방향이 하나의 주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비스로호시의 경우는 기업회계적 복식부기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Ⅲ. 비스로호시의 기업회계적 복식부기(도픽)의 도입사례

1. 도픽의 도입 경위

비스로호시는 바덴베르텐베르그주의 북부에 위치한 인구 2만5천명 정도의 시이다. 전국에서 선구적으로 도픽(행정지향의 기업회계적 복식부기)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점에서 자치단체관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스로호시가 도픽의 도입에 돌입하게 된 것은 바덴베르텐베르그주 내무성의 노력에 의한 바가 크다. 당시 동주 내

무성은 기업회계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예산회계제도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던 중에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하기 위한 모델자치단체를 모색하고 있었다. 모델자치단체의 조건으로는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고정자산에 관한 데이터가 비교적 갖추어져 있을 것, 연결결산을 행할 수 있는 몇 개의 공기업이나 대출기업을 가지고 있을 것, 전 자치단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중규모의 자치단체일 것 등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 합치하고 또한 적극적인 자세를 표시한 것이 비스로호시였다.

이로서 1994년에 주, 시, 대학관계자를 멤버로 하는 워킹그룹에 의해 도픽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가 개시되어 1996년부터는 관청회계와 도픽의 2체제로 회계처리가 행해지게 되었다. 시스템개발비등 시행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는 주가 부담했다. 이와 같은 경위를 거쳐 도픽만에 의한 회계처리가 행해지게 되었다.

종래의 관청회계에서 도픽으로의 대체는 동 주자치단체법에 규정된 「실험조항」을 법적인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을 신청할 경우에 주정부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자치단체법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2. 새로운 예산회계시스템의 개요

도ष의 도입에 의한 새로운 예산회계 시스템은 첫째, 차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리소스소비의 전체를 명확히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기업이나 독립기업을 포함한 시의 활동전체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셋째, 재정책임 및 권한의 분산화에 대응하여 개개의 행정부문별 및 사업별로 비용대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중시의 행정관리를 행한다는 점이다. 넷째, 연도중에 있어서도 예산의 집행상황, 자산·부채의 상황등을 의회가 체크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1) 3개의 회계

새로운 예산회계시스템은 자산회계, 성과회계, 재무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회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산회계는 1996년 말 현재 <표 2>와 같이 자산 및 부채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에

<그림 1> 3개 회계의 관계



해당한다. 자산은 매각가능자산과 행정 자산으로 구분되고 있다. 행정자산은 행정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이고 매각 가능한 자산은 그 외의 유탈토지 등으로 보통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매각 가능한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한편 행정 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감가상각 분만 공제된다. 행정자산중 1950년 이전에 취득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크기나 형상 등에 대해 새롭게 측정하여 1950년에 취득된 것으로 하고 있다. 평가시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협력을 얻어 가능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 자기자본에 해당한다. 자기자본중 기금 및 투자보조금,

<표 2> 자산회계(단위: 백마르크)

자산		부채 · 자기자본	
매각가능자산	86.4	부채	101.8
물적자산	32.2	차입금	36.3
금융자산등		기타 채무	3.2
금융자산(출자등)	27.5	연금충당금	18.1
기타 채권	6.5	재정조정충당금	44.2
유동자산	20.2		
행정자산	161.8	자산과 부채의 차액(자기자본)	146.4
물적자산		자본자산	88.7
통상고정자산	63.9	기금	
공공사용고정자산	75.7	통상수지차액분	3.0
제고품	0.2	통상외수지차액분	2.0
		평가손익차액분	
금융자산(출자등)	22.0	목적기금	1.0
		투자보조금, 부담금등	51.7
자산총계	248.2	부채 · 자기자본총계	248.2

부담금 등을 제외한 것은 기본자산으로 하고 이것이 줄지 않게 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하나의 목표가 되고 있다.

둘째, 성과회계는 <표 3>과 같이 1996년말 현재 연도내의 수입 및 리소스 소비의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손익 계산서에 해당한다. 경상지출중 감가상각은 행정자산에 대해서만 행해진다. 감가상각액은 정액법으로 산정되고 내구년수는 예를 들어 학교의 교사가 50년,

도로가 25년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해 리소스의 소비와 수입에 대해 현금의 이동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전부가 발생한 연도내에 계상되어 세대간에서의 리소스의 공평한 분배를 기할 수 있다.

셋째, 재무회계는 연도내의 유동자산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 4>와 같이 종래의 관청회계에 있어서의 예산결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성과회계(단위: 백마르크)

통상수입		
공조공과(조세수입)	62.3	
교부금	8.3	
사용료, 부담금	15.5	
임대수입등	1.3	
이자수입	1.9	
기타 통상수입	1.9	+91.2
통상지출		
인건비	12.5	
연금충당금전입	1.6	
물건비	19.3	
감가상각	7.1	
지불이자	2.6	
이전지출	45.1	-88.2
(보조금, 납부금)		
통상수지		+3.0
통상외지출 및 수입		
실현한 통상외수입	+2.0	
실현한 통상외지출	-0.0	
통상외수지		+2.0
평가익	+1.4	
평가손	-4.2	
평가손익		-2.8
합계		+2.2

<표 4> 재무회계(단위: 천마르크)

경상불입	+95,438.8
경상지불	-84,496.3
통상외불입	+408.4
차액	+11,395.9
투자보조금, 부담금	+1,320.3
자산매각익	
물적자산	+3,264.3
금융자산	+118.3
투자지불	
물적투자	-7,568.6
출자	- 437.9
재정자금잉여	+8,092.3
차입금상환	-2,495.0
유동자산증감	+5,597.3
그중 예금분	-2,545.2
차액	+3,052.1

2) 예산

예산은 성과회계예산 및 재무회계예산으로 구성되고 있고 양자는 각각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행정관리」, 「시민서비스」, 「교육, 사회보장」, 「스포츠, 문화」등의 20개의 부분예산으로 나뉘어진다. 부분예산은 35개의 생산물 그룹과 나아가 150개의 생산물로 구분되어 있다.

의회에서 각 부분예산별로 순리소스 소비액(성과회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 순유동자산소비액(재무회계에 있어서의 불입과 지불의 차액) 및 아웃풋[생산물(정기적사업), 프로젝트(이벤트등 임시적 서비스), 투자로 구분되는 것]이 결정된다. 각 행정부국은 아웃풋의 달성에 책임을 지고 결정된 차액의 범위내에서 스스로의 재량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3) 생산물별 원가계산

의회에서 각 행정부문에로의 재원배분 결정의 전제로서 생산물별의 원가(리소스소비액)가 산정된다. 이에 따라 각 생산물별로 민간기업과의 코스트비교도 가능하게 된다. 생산물별의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 지불이자, 청사유지비, 비품 등 집중관리되고 있는 경비 등을 포함하고 모든 코스트가 생산물별로 분해되어 산정되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몇 개의 생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일의 량에 따라 나누어 고려한다. 또한 각 생산물간의 경비의 유통에 대해서도 전부 청산된다.

이와 같은 경비의 분할적용이나 내부청산의 작업량은 방대하지만 비스로호

시에 있어서는 전부 시스템화되어 있고 일상의 청구서 등의 입력시에 코드를 붙임으로서 자동적으로 경비의 분할계산, 내부청산이 행해지는 체계로 되어 있다. 현재는 모든 생산물을 서비스 단위에 의해 수치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성하면 각 생산물마다 비용대효과 분석이 용이해질 수 있게 된다.

4) 컨트롤링

상기 시스템에서는 수시로 그 시점에서의 예산의 집행상황이나 부채 상황 등에 관한 정보의 도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장이나 의회는 각 행정부문에 있어서의 리소스소비와 성과의 상황에 대해 연도중에도 체크와 컨트롤을 행할 수 있다.

5) 연결결산

자산회계 및 성과회계에 대해서는 행정의 중핵부분에 공기업과 시의 출자회사 등을 덧붙인 연결결산이 행해지고 재정 전체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시의 출자회사등에 대해서는 각 결산수치에 각각의 자기자본에 접하는 시의 출자액의 비율을 곱한 것이 연결된

다. 또한 연결되는 회계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중계상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제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상쇄된다.

3. 도픽의 도입 효과

비스로호시의 도픽도입의 효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리소스소비등에 관한 정보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어 관리부문에 있어서 행정관리가 보다 쉬워졌다는 점이다. 또한 자기 자본중 기본자산을 줄이지 않고 감가상각분으로 투자를 함으로서 자산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등 스스로 재정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자산 및 부채의 상황이나 리소스소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서 의회나 시민에게 있어서 시 재정의 전체상에서 부터 개별의 생산물의 원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직원에게 코스트의식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집중관리되고 있는 비품의 사용등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트의식이 없었지만 신시스템에 있어서는 관리부문에 지불의 형태로 비용이 계상되게 되어 절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민간과의 코스트

비교가 행해지게 되어 내부에서 조달하기 보다 민간이 값싼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행해지게 되었다. 이 결과, 1998년에 사무관리비를 25% 삭감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산의 평가방법이나 생산물의 수량적 평가에 있어서 기술적인 검토과제는 남아있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의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의 결과를 어떻게 정책결정에 활용해 나갈 것인가, 예산편성이나 컨트롤링을 통해서 의회의 체크기능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 시민에게 재정상황 등에 대해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인가 등의 운용상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맺는 말

독일 자치단체에서는 1990년대 재정난을 계기로 행정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신행정관리모델의 도입 확산으로 이어지고 이를 배경으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지향의 기업회계적 복식부기(도픽)의 도입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치단체에 있어서 도픽의 부분적인

도입과 전면적인 도입에 있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한 도표의 전면적인 도입 움직임이 성숙되고 있고 또한 실제 도입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도표의 경우는 이미 소개한 일본의 기업회계적 복식부기 방식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는 또 다른 형태의 기업회계적 복식부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복식부기의 방식은 대동소이하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회계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는 많은 특성을 갖고 있어 주목할 만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복식부기 도입에 있어 독일의 방식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사용어 해설

•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포장하다’는 뜻의 랩(Wrap)과 ‘계좌’(Account)를 합친 말. 그동안 고객들은 증권사에 계좌를 터놓고,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건당 수수료를 내는 식으로 거래해 왔다. 증권사들은 그 수수료가 주된 수입원이다 보니,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려고 고객들에게 무조건 주식을 많이 사고 팔게 유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비해 랩 어카운트란 고객들이 맡긴 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연간 2~3% 가량의 수수료만 받고, 적절한 투자전략을 짜주는 등의 재테크 서비스를 하는 상품을 말한다. 대개 1억원 이상의 거액을 맡기면 우선 고객이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인지 안정형인지를 분석한 뒤, 그에 맞는 자금을 운영해줄 투자상담사를 골라주거나 마땅한 펀드를 골라주는 ‘맞춤형’ 상품이다. 직접 주식투자를 하겠다는 고객이라면, 가령 1억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내면 10번이든 20번이든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다.

- 편집실 -